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

<회사명>

경기과학기술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와 _____(이하 “산업체”라 한다)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(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

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학사과정으로 한다.

② 지원 학과별 산업체위탁교육생은 다음과 같다.

학과명	성명	생년월일	비고

제3조(위탁생의 자격)

고등학교 졸업(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,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 한다.

제4조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산업체에서 추천한다.

② 본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대학이 정한다.

제5조(교육과정의 편성)

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6조(위탁생의 준수사항)

① 매학기 개시전 2월, 8월(연2회)에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.

② **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 한다.** 다만 자발 퇴직 후 **3개월 이내**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고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재학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6개월 이내 타 산업체 이직 시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④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,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.

⑤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재직 하여야 한다.(8월 말일 이전 퇴직한 경우 제적처리)

제7조(산업체 교수요원 활용 및 시설이용)

위탁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산업체의 시설사용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이 약정을 별표로 첨부한다.

제8조(등록금 납부) 위탁교육생의 등록금은 본 대학의 일반학생 수준으로 한다.

제9조(위탁생의 신분)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10조(기타사항) 기타 모든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.

년 월 일

대학명 : **경기과학기술대학교**	산업체명 :
총 장 : (직인)	대 표 : (직인)

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

<회사명>

경기과학기술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와 _____(이하 “산업체”라 한다)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(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

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학사과정으로 한다.

② 지원 학과별 산업체위탁교육생은 다음과 같다.

학과명	성명	생년월일	비고

제3조(위탁생의 자격)

고등학교 졸업(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,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 한다.

제4조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산업체에서 추천한다.

② 본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대학이 정한다.

제5조(교육과정의 편성)

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6조(위탁생의 준수사항)

① 매학기 개시전 2월, 8월(연2회)에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.

② **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 한다.** 다만 자발 퇴직 후 **3개월 이내**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고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재학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6개월 이내 타 산업체 이직 시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④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,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.

⑤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재직 하여야 한다.(8월 말일 이전 퇴직한 경우 제적처리)

제7조(산업체 교수요원 활용 및 시설이용)

위탁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산업체의 시설사용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이 약정을 별표로 첨부한다.

제8조(등록금 납부) 위탁교육생의 등록금은 본 대학의 일반학생 수준으로 한다.

제9조(위탁생의 신분)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10조(기타사항) 기타 모든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.

년 월 일

대학명 : **경기과학기술대학교**	산업체명 :
총 장 : (직인)	대 표 : (직인)